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대한 탄압에 관한 긴급진정서
장애인권리에관한특별보고관, 집회시위에관한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I. 진정에 관한 정보

작성 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¹

한국장애포럼²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³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두루

연락처

성명: 연윤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송길25 유리빌딩, 5층

이메일: sadd@daum.net

성명: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주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송길25 유리빌딩, 5층

이메일: kdf@thekdf.org

¹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ADD) is a coalition consisting of Korean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190 local, civil, labor, human rights, and culture and arts organizations to abolish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o achieve basic rights.

² Korean Disability Forum (KDF) is a coalition consisting of 16 Disabled Peoples' Organis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Since 2012, KDF has been working for international disability rights advocacy including disability-inclusive SDGs and UN CRPD. It has ECOSOC special consultative status since 2020.

³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is an NGO with special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UN ECOSOC which strives to advocate for basic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orea through litigation, research and various advocacy activities since 1988.

⁴ Activists group for Human Rights 'BARAM' - Founded in 2018, Baram is a solidarity and action-based human rights activist network that fights against the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to protect the values of equality and peace. Baram also works to create a society where the values of equality are embodied by challenging patriarchy and capitalism that suppress the rights of all members of society.

성명: 류다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74, 2층

이메일: dlyu@minbyun.or.kr

성명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주소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51길 7-13

이메일 : windhope.humanrightsnet@gmail.com

성명 :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주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29-6, 3층

이메일: gonggam@gmail.com

연명 단체(한국 304개 단체, 해외 2개 단체)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강릉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춘천호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아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주디딤돌자립생활지원센터,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주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화성동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고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통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비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가치이룸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행복드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하나은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피플퍼스트성북센터,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큰우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주변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무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안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고창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익산시장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주사나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 91개 단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서울지부(25개 지회), 부산지부(1개 지회), 인천지부(7개 지회), 대구지부(5개 지회), 광주지부(3개 지회), 대전지부(5개 지회), 울산지부(5개 지회), 경기지부(20개 지회), 강원지부(4개 지회), 충북지부(8개 지회), 충남지부(12개 지회), 전북지부(6개 지회), 전남지부(7개 지회), 경북지부(11개 지회), 경남지부(18개 지회), 제주지부(1개 지회), 세종지부 총 155개 단체),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노들장애인야학,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마을이신나는장애인야학, 안산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 오산성인장애인야학'씨앗', 함께배움장애인야학, 수원새벽빛장애인야간학교, 김포장애인야학, 반딧불장애인야학, 아우름장애인야학, 강릉하슬라장애인야학, 작은자야간학교, 민들레장애인야학, 바래미야학, 장애인 참배움터, 모두사랑장애인야학, 대전장애인배움터풀꽃야학,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디딤돌장애인야학, 실로암장애인평생교육원, 새누장애인평생교육원, 다운장애인평생교육원, 다사리학교, 해뜨는학교, 목포여성장애인평생교육원, 순천팔마장애인평생교육원, 광양장애인평생교육원, 밀양장애인평생학교, 진해장애인평생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희망 품은 장애인 야학, 함께 여는 새날 총 32개 단체),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한국여성노동자회, 홈리스행동, 신경다양성 지지모임 세바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국제민주연대, 녹색당,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구속노동자후원회,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한국여성의전화, 고아권익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진해장애인인권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권교육센터 들, 민달팽이유니온,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Validity Foundation, Disabilitas Tegal Bahari.

II. 핵심내용

한국의 장애인권단체와 장애인권리옹호자들은 정부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대응으로 집회의 자유와 인간 존엄성을 위협받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2월 현재까지 매일 아침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할 것과 이를 위한 정부의 예산 배정'을 촉구하고, 알리기 위해 20여명의 휠체어 이용자가 동시에 지하철에 탑승하거나 지하철 승객들을 향해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식으로 평화로운 집회(이하 '지하철 타기 행동')를 이어왔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인단체들의 요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시위를 '불법 행위'로 매도하며 원천 봉쇄하고, 과도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시위 참가자를 억압하고 있다.

2023년 1월 2일 전장연 등 장애인권옹호자 약 200여명은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권리에산 확보를 촉구하는 '지하철 타기 행동'을 시도하였으나, 현장에 투입된 경찰 10개부대 약 800명의 봉쇄에 의하여 14시간 동안 삼각지역 내에 고립된 채 체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밀치고 넘어뜨렸으며,

전동휠체어의 조이스틱을 부수고, 엘리베이터 사용을 전면 차단하였다. 전장연 활동가 면전에 확성기를 대고 '불법시위를 멈추라'고 하거나 20초마다 경고 방송하는 방식으로 집회 참가자의 발언이 들리지 않도록 방해하였다.

삼각지역에서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전장연의 '지하철 타기 행동'을 차단하였고, 서울 지하철 대부분의 역사에서 5분 간격으로 "전장연 집회로 인해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 한다"는 안내방송을 하였다. 또한, 서울·경기·인천 권역의 시민에게 "전장연의 불법시위로 인해 삼각지역을 무정차 통과 한다"는 내용의 재난안전문자를 일괄 발송하여 '지하철 타기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이튿날인 3일 그리고 1월 20일, '오이도역 추락참사 22주기에'도 반복되었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23년 1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 집회에 참가한 전장연 회원 29명 가운데 24명을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2명을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장연 활동가들의 사건은 이례적으로 국가보안법위반 등 공안사건을 전담하는 공공수사부로 배당되었는데, 이는 장애인권 활동가들을 '공안사범'으로 내몰아 인권옹호자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법집행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등을 상대로 '지하철 타기 행동'을 이유로 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6일 6억원 규모의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언론을 통해 알렸다. 현재 전장연 활동가 등은 2023년 1월 세 차례에 걸친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등 공권력의 폭압적인 집회 탄압과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에 따른 지하철 이용객과 인터넷 상 극악한 비난 댓글 등을 겪은 후 심각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으며, 골리앗인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다.

<지하철타기 행동(Subway-taking campaign)>

2001년, 휠체어를 이용하는 두 노인 장애인이 오이도역에서 휠체어용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은 한국 장애 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애인들은 교육, 노동, 이동, 탈시설 등 전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사회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 참여의 가장 기본적 요소중 하나인 대중교통마저 장애인은 목숨 걸고 이용해야 하는 현실을 알리고자 했다. 이러한 의도는 2001년 3월 9일부터 시작된 '장애인과 함께 지하철 타기' 캠페인으로 이어졌다. 휠체어 접근성이 저조한 열차에 한꺼번에 많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연착이 발생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는 장애인 이동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장애차별적 사회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캠페인이 되었다. 이후에도 지하철타기 행동은 (1) 장애차별적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 (2) 일상적 공간에 장애인을 '출현'시킴으로써 장애인도 시민임을 드러내는 등의 상징성을 갖는 장애운동의 주요 시위 방식으로 자리매김했다.

<사건 타임라인>

2001년 3월 9일, 첫 지하철 타기 행동. 이후 장애인 권리 보장 촉구 캠페인으로 지하철 타기 행동이 부정기적으로 진행됨.

2021년 1월~11월, 7회에 걸쳐 지하철 타기 행동 진행.

2021년 11월 23일, 서울교통공사에서 2021. 1~11. 지하철 선전전 관련 전장연+대표활동가들 상대 민사소송(3천만원, 2021.1.22.~11.21. 7차례) 제기

2021년 12월 3일, 장애인권리보장 및 예산증액 촉구 매일 지하철 타기 행동 시작

2022년 1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조정안 제시(5분 미만 집회+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2022년 12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에 "휴전" 제안, 전장연 수락

2022년 12월 24일, 국회 예산 통과 / 장애인권리예산은 전장연 요구 예산안의 0.8% 증액에 그침. 지하철 선전전 재개 선언

2022년 12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포스팅으로 "무관용 원칙" 발표

2023년 1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 라디오 언론 인터뷰에서 '내일부터 무관용' 발언

2023년 1월 2일, 전장연의 지하철 타기 행동이 삼각지역에서 14시간 대치, 집회참가자 부상 다수, 지하철 무정차

2023년 1월 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기자회견 - 전장연 활동가 24명 검찰 송치, 2명 추가 조사중임을 밝힘. 서울지검公安부서 배당

2023년 1월 3일, 마찬가지로 폭력 진압, 부상, 지하철 무정차

2023년 1월 6일, 서울중앙지법 2차 조정안 제시(서울교통공사의 이의제기에 따라 '5분 미만' 문구 삭제, 사실상 지하철타기 행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

2023년 1월 6일, 서울교통공사에서 전장연 및 대표활동가들 상대 추가 민사소송(6억145만원, 2021.12.3.~2022.12.15. 75차례) 제기하겠다고 발표

2023년 1월 20일, 오이도역 추락참사 22주기 3개 지하철역에서 선전전 - 이번에도 폭력진압, 부상, 지하철 무정차

III. 사건의 경위

1. 한국의 장애인 관련 예산은 GDP 대비 0.6%로 OECD 국가 평균 2.02%의 1/3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러한 불평등한 예산 구조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의 장애인들은 교육, 노동, 이동, 정치참여 등 다양한 시민권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021년 12월 3일부터 2023년 2월 현재까지 매일 아침 한국의 수도권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⁵에서 지하철 타기

⁵ 삼각지역(대통령실 부근), 경복궁역(청와대) 부근, 국회의사당역 등에서 관련 이슈와 정세에 따라 변경하며 진행하였다.

행동을 해왔다.⁶ 이를 통해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이를 위한 예산 증액을 촉구해왔다⁷.

2. 그러나 한국 정부는 장애인들의 꾸준한 요구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장애인 단체들의 정당한 집회시위의 권리행사를 ‘불법 행위’로 매도하며 장애인 권리 보장을 외면하고, 장애인 권리를 촉구하는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국가적인 혐오를 조장해 왔다. 지난 2022년 봄, 장애인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지하철시위에 대하여 당시 제1야당(현재 여당) 대표 이준석은 “전장연이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면서 전장연과 장애인권활동가들 그리고 이들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사회적 혐오를 추동하였다⁸.
3. 1년여간 지속된 지하철 선전전과 지하철 타기 행동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이나 탈시설 등 자립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 11월 전장연 등 집회 참가단체들을 상대로 지하철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하철 타기 행동에 따른 열차 지연이 5분을 초과할 경우 집회참가자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았음에도, 서울교통공사의 관할 주체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철은 1분만 늦어도 큰일나는데 5분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중재안을 거부하였고,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4. 한편, 2022년 12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전장연 지하철 탑승시위, 휴전을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포스팅을 올려 국회의 예산안 처리시점까지 지하철 탑승 행동을 중단해달라 요청하였고 이에 전장연은 집회를 중단하였다.
5. 그러나 12월 24일 국회에서 장애인권리예산이 요구 대비 0.8% 증액하는 것으로 그치자 전장연은 1월 2일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할 것임을 선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 "시민들이 그동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극도의 인내심을 보여주었는데, 서울시장으로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시위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와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IV. 2023년 1월 지하철 타기 행동에 대한 탄압

6. 앞서 밝힌 대로 장애인권단체들은 2023년 1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지하철 타기 행동을 재개하였다. 2023년 1월 2일 전장연 등 장애인권옹호자 약 250여명이 대통령

⁶ BBC News, South Korea: 'Protesting for 20 years and still no equal rights', 27 January 2023,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64369810> (최종방문일: 2023. 2. 13.); BBC News, South Korea disability activists sued by subway bosses for causing 'major disruption', 27 January 2023, <https://youtu.be/aUhkaO1ZPIU> (최종방문일: 2023. 2. 13.).

⁷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권단체들의 꾸준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미미했다. 장애계가 요구한 장애인권리예산은 1조 3천억 원이었으나, 결국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된 예산에는 그 0.8%인 106억 원만 반영되었다.

⁸ Yonhap News, (LEAD) PPP chief in controversy after criticizing disability advocacy group over rush-hour subway protests, March 28, 2022, <https://en.yna.co.kr/view/AEN20220328003751315> (최종방문일: 2023. 2. 13.).

집무실이 위치한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지하철 타기 행동을 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투입된 경찰 10개부대 약 600명에 의해 14시간 동안 삼각지역 내에 고립된 채 제지당하였다. 1월 3일에는 장애인권옹호자 70명이 다시 평화롭게 지하철 탑승 행동을 시도하였으나 경찰 200여명에 의해 강하게 제지당하였다. 경찰은 방패를 들고 지하철 기체 출입문을 막아섰고,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밀치고 넘어뜨렸으며, 휠체어를 부수고 엘리베이터 사용을 전면 차단하였다. 역사 내에서는 전장연이 발언을 하면 20초마다 경고방송을 하고, 발언을 하는 활동가의 면전에 확성기를 대고 '불법시위를 멈추라'며 고의적으로 방해하였다. 이로 인해 지하철행동에 참여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틀에 걸친 집회에서 단 한 차례도 지하철에 탑승하지 못했다. 휠체어 임의 조작, 파손, 탑승 저지 등의 폭력적인 진압 과정에서 최소 15명의 부상 및 휠체어 파손이 발생했다.⁹

7. 이틀 간의 폭력적인 공권력의 집회탄압 이후 17일만인 2023년 1월 20일, 전장연을 포함한 장애인단체들은 22년 전 장애인이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추모하며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 서울역, 삼각지역에서 지하철타기 행동을 재개했다. 이번에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서울경찰청은 세 개 역 모두에 각각 400여명의 경찰, 수십명의 교통공사 직원들을 배치하여 장애인권 활동가들의 열차 탑승을 가로막으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V. 인권 침해 사항 및 관련 법제

8. 대한민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하 “자유권규약”)을 1990년 4월 10일에,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2008년 12월 11일에 각 비준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자유권규약 제21조에 따라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및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번 지하철 시위에서 당국은 아래와 같이 인권옹호자, 장애당사자와 장애단체의 집회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국제인권법을 위반하였다.

A. 평화로운 집회 시위에 대한 과잉진압과 봉쇄 및 케틀링

9. 평화적 집회의 권리(자유권규약 제21조)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7호(이하 “일반논평”)는 집회 참여자를 에워싸고 가두는 봉쇄와 케틀링(kettling) 방식은 폭력과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성과 비례원칙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엄격히 밝히고 있다.¹⁰ 특히 논평은 집회 참여자 모두를 일괄적으로 가두는 봉쇄의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폭력과 직접 관련된 이들만을 대상으로 봉쇄시간 역시도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도록 해야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지하철타기 행동 사안에서 이러한 원칙은 모두 무시되었고, 경찰은 1)폭력과 위협이 없는 평화적인 지하철시위에 대하여, 2)필요성과

⁹ 한겨레 “[Editorial] Seoul’s callous response to disability rights protests” https://www.hani.co.kr/arti/english_edition/e_editorial/1074256.html (최종방문일: 2023. 2. 13.).

¹⁰ CCPR/C/GC/37, para 84.

비례원칙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채, 모든 집회참가자들에 대하여 일괄적인 봉쇄, 케틀링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10. 구체적으로 전장연은 2023년 1월 2일 오전 8시부터 삼각지 지하철역에서 장애인권리에산 확보를 촉구하는 지하철타기 행동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되었다. 이날 지하철타기 행동을 위해 약 200명의 장애인권옹호자들이 삼각지역에 모였는데, 경찰은 10개부대(약 800명)가 투입되는 등 경찰력이 과잉 배치되었다. 결국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권 활동가들은 15시간가량 삼각지역에 고립된 채 경찰의 폭력적 진압의 대상이 되었으며, 경찰력으로 세워진 인간 바리케이트에 가로막혀 끝내 지하철에 탑승하지 못했다¹¹. 이튿날인 1월 3일, 다시 지하철 탑승 및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시도하였으나, 경찰 기동대 3개 중대, 여경 2개 제대 등 200여명이 투입되어 또 다시 전장연의 지하철타기 행동을 가로막았다.¹²
11. 위 과잉진압이 발생했던 1월 3일 이후 17일만인 1월 20일에 전장연 등 장애인권단체들은 지하철타기 행동을 오이도역, 삼각지역, 서울역에서 재개하였는데, 경찰병력은 기동대 5개부대 400여명이 배치되었고, 경찰의 과잉진압은 동일하게 반복되었다.¹³ 이로 인해 장애인권 활동가들은 3시간가량 지하철에 지하철역에 고립되었다.
12. 결과적으로 봉쇄방식의 대응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에 대한 침해 뿐 아니라 억류되지 아니할 자유, 이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논평이 우려한 바와 같이,¹⁴ 경찰의 봉쇄로 인하여 집회 참여자들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 뿐 아니라 억류되지 아니할 자유, 이동의 자유까지 침해당하였다.

B. 폭력진압으로 인한 집회시위 및 신체의 자유 침해

13. 이번 집회에서 경찰은 봉쇄방식의 대응을 넘어서서 집회 참여자들을 난폭하게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등의 폭력적인 진압을 하여 15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신체적인 피해와 휠체어 파손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 및 이를 보호하려는 활동가들을 난폭하게 진압하거나 폭력적으로 밀치고 넘어뜨리는 영상 및 사진도 다수 보고되었다(첨부자료 참조). 이에 더하여 경찰은 장애인 활동가들의 전동휠체어 조이스틱을 임의 조작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방향을 움직이거나, 컨트롤러를 파손하거나 전원을 꺼 당사자를 움직일 수 없게 하는 등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심각하게 침해하기도 하였다.
14. 이는 집회 참여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여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집회 참여자의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다¹⁵. 논평은 집회 중에 ‘정당한’ 법 집행상 물리력이 필요할 경우, ‘필요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¹⁶. 물리력은 폭력적인 개인에 대해서만

¹¹ 연합뉴스, “Disability rights activists again blocked from staging subway protest”, 2023. 1. 3., <https://en.yna.co.kr/view/AEN20230103004151315?section=search> (최종방문일: 2023. 2. 13.).

¹² 한겨레 “[영상] 지하철 문앞에, 방패 든 경찰...전장연 탑승 아예 막았다”, 2023. 1. 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4177.html?_ga=2.51119535.726319515.1673164421-1618581059.1659270449 (최종방문일: 2023. 2. 13.); 코리아타임스, “Disability activists continue subway protests in Seoul”, 2023. 1. 4.,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3/01/251_342985.html (최종방문일: 2023. 2. 13.).

¹³ 한겨레,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22주기에도 가로막힌 ‘열차 탑승’, 2023. 1. 2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6532.html (최종방문일: 2023. 2. 13.).

¹⁴ CCPR/C/GC/37, para 84.

¹⁵ 자유권규약 제12조; 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¹⁶ CCPR/C/GC/37, para 79.

사용되어야 하고, 비례원칙을 넘어서는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 1월 자행한 폭력적인 진압은 1)'정당한' 법 집행도 아니며, 2)'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의 행사라고 간주할 수 없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직원들 역시 장애인권 활동가들에 대해 폭언을 하거나 밀치고 잡아채는 등 폭력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경찰은 폭력을 행사하는 지하철 직원들에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방치하였다.

C. 서울교통공사의 집회 방해

15. 서울교통공사는 무정차통과, 이동식 안전발판을 방패처럼 사용하여 장애인활동가들의 지하철 탑승저지, 방송과 확성기 사용 등으로 전장연의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방해하였다.

a. 무정차통과: 서울교통공사는 1월 2일, 전장연 등 단체가 지하철에 탑승하려 한 삼각지역에 지하철 13대가 정차하지 않고 통과함으로써 전장연의 지하철 선전전을 원천봉쇄하였다¹⁷. 1월 20일에도 오이도역, 서울역,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단체들은 지하철 탑승을 저지당했을뿐만 아니라, 서울역에서 67분간 16대, 오이도역에서 3시간동안 2대 이상, 삼각지역에서 50여분간 약 10대의 지하철이 각 역을 무정차 통과하였다.¹⁸

b. 이동식 안전발판으로 탑승저지: 승강장과 열차간 넓은 틈에 유아차나 휠체어 바퀴가 빠지는 위험한 사고들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궁여지책으로 '안전발판'을 도입하며 승하차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집회 대응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이러한 '안전발판'을 들고 휠체어가 지하철을 탈 수 없도록 막아내는 등 휠체어 이동을 방해하는 방패처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⁹.

c. 방송과 확성기 사용: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 발언을 할 때마다 15~20초마다 경고방송을 하고, 발언을 하는 활동가의 바로 앞에서 확성기를 통해 "여러분은 강제퇴거 대상이다. 당장 역사 밖으로 퇴거하라", "역사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연설 행위,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 등은 철도안전법상 금지된다. 전장연은 즉시 시위를 중단하고 역사 밖으로 퇴거하길 바란다. 불응 시 열차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경고 발언을 하여 장애인권 활동가들의 발언이 전달될 수 없도록 고의적으로 방해하였다. 이러한 서울교통공사의 대응은 한국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를 규제대상으로 하므로, 지하철 역사에서의 옥내집회는 법적 제한대상이 아니라는 점, 따라서 기존 지하철 역사에서의 집회 등이 평화롭게 진행되어왔던 점에 비추어볼 때 매우 이례적이고 과잉적인 대응이었다. 서울교통공사의 방송조치, 확성기 등의 집회

¹⁷ 연합뉴스, "전장연 13시간 시위...지하철 4호선 13대 무정차(종합4보)"

<https://www.yna.co.kr/view/AKR20230102030654004?input=1195m>

¹⁸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압사로 인해 160여명이 사망한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지하철 무정차가 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역장들은 무정차 통과를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통상 기관간 무정차 통과는 고위층끼리 서로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면서 참사 당일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하여 변명하였다. 조선비즈, '이태원 참사' 지하철 무정차 논란...野 "상인회도 요청", 2022. 12. 29.,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12/29/BHUJYJ3W3RFAVPWF34QYY5DOY/> (최종방문일: 2023. 2. 13.).

¹⁹ 경향신문, '벽이 되어버린 '장애인 안전 발판' 그보다 더 높고 두터운 '냉소의 벽'[금주의 B컷]' <https://v.daum.net/v/20230106160740251?from=newsbot>

방해로 인하여 “참여자 가능한 대상 관중의 시야 및 가청 범위 내에서 집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²⁰는 원칙은 지켜질 수 없었다.

D. 집회 장소로의 이동과 해산 방해

16. 논평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의 보장을 위해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활동들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²¹. 집회 장소로의 이동, 주최자의 자원 동원, 집회장을 떠나는 것이 모두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시위에서 참여자들은 집회 진행은 물론 집회장소로의 이동과 해산 등에 있어서 모두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 역사 진입을 위한 엘리베이터 진입금지, 지하철역 휠체어 출입구 폐쇄 등으로 인해 상당수의 참여자들은 집회장소인 역사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장애인 활동가들은 집회를 해산한 이후에도 경찰에 가로막혀 지하철 탑승을 저지당했고 집회장을 평화롭게 떠날 수 없었다²².

a. 엘리베이터 무단 폐쇄: 서울교통공사는 1월 2일, 삼각지역 엘리베이터에 ‘고장 조치 중’이라는 안내문을 붙여 이용을 막았고, 이튿날인 3일에도 엘리베이터에 ‘승강기 안전검사’를 이유로 탑승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각지역 엘리베이터 ‘고장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엘리베이터에 붙인 ‘고장’ 안내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집회 참여를 막기 위한 임의적 조치였다²³.

b. 지하철역 휠체어 통과 출입구 폐쇄: 2023년 1월 2일, 삼각지역의 휠체어 통과 출입구에 ‘고장조치중’이라는 표식을 붙인 채 문이 열리지 않았다.

E. 장애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과도한 민, 형사상 처벌 시도

17.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와 활동가들을 상대로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진행한 지하철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3천만원(약 25,000달러)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12월 19일 두 소송당사자인 전장연과 서울교통공사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안은 ‘(1)서울시 전체 지하철역사 275개역 중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된 19개 역사에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 설치할 것, (2) 전장연이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휠체어 및 기타 도구 등으로 열차 운행을 5분 초과하는 경우 1회당 500만원(약 4,000달러)을 지급할 것’으로 구성되었다.

18. 전장연은 2023년 1월 1일 ‘열차 지연 5분 초과시 500만원 지급’ 조정안 자체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문제를 인지하고 이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러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집회시 지하철 운행 지연을 5분 이내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의 관할 주체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3년 1월 1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씩이나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²⁴”이라면서 “내일부터 지하철을 연착시키면

²⁰ CCPR/C/GC/37, para 22.

²¹ CCPR/C/GC/37, para 33.

²² 전장연 회원인 문경희 세종보람센터 소장은 1월 2일 집회에 탑승했다가 세종시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려 했으나 경찰에 가로막혀 탑승을 저지당했다.

²³ 한겨레, “[단독] 멀쩡한 승강기에 ‘고장’...전장연 막는다고 교통약자도 막았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5568.html?fr=gg#cb

²⁴ 오세훈 서울시장 “지하철은 1분만 늦어도 큰일”이라며 전장연을 몰아세웠지만, 지난해 1~9월 사이 전장연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은 39일이었지만 차체 결함이나 시스템 장애로 인한 지연 운행은 89일이나

민형사적 대안을 모두 동원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라면서 조정안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후 1월 6일,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에 6억 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²⁵.

19.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23년 1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1년 1월부터 지하철 시위에 참여했던 장애인권활동가 중 29명에 대해 수사 중이고, 이 중 27명에 대한 조사를 마쳐 24명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남은 2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위에 직, 간접적인 관련있는 활동가를 포괄적으로 기소하고 송치하는 것 다름없다.
20. "한편 장애인권활동가들의 위 형사사건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철도범죄를 전담하는 형사5부가 아닌 국가보안법위반 등 공안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되었다. 이는 평화적 집회의 주최자나 참여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비차별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고²⁶, 남북한 대치 상황으로 여전히 이념적 대립이 선명한 대한민국에서 장애인권활동가들을 '공안사범'으로 내몰아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들에 대한 과도한 범집행을 예고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21. 유엔인권옹호자 선언 제12조는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인 권 및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평화적 활 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권리옹호자가 옹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2013년 5월 한국을 방문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2014년 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지적했던 장애인인권활동가들이 처한 어려움²⁷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반복되고 확대되고 있음을 뜻한다.

F. 장애인권옹호자들에 대한 혐오표현 및 사회적 비난 여론 조장

22. 이러한 과잉/폭력 진압과 인권 활동가에 대한 탄압은 집회시위 및 인권에 대한 정부의 심각한 인식을 드러낸다. 정부의 반인권적 태도는 주요 정부 인사들의 발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은 “전 부처 요구사항 다 담다보면 대한민국 망한다”며 장애인들의 예산 증액 요구를 일축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무려 106억 원이나 반영되었다(...)전장연이 무리한 액수를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다시 무고한 시민들의 출근길을 막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트집잡기(...)약자성이 모든 불법행동, 과잉행동을 정당화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장애인 권리 투쟁을 폄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1년 넘게 지속된 지하철 운행 지연 시위에도 시민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극도의 인내심을 보여주셨다”면서 “그러나 서울시장으로서 이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 시위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면서 “전장연의 시위

됐다. 한겨레, “‘짜증’을 동력 삼은 행정”, 2023. 1. 8.,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4885.html> (최종방문일: 2023. 2. 13.).

²⁵ 연합뉴스, “Seoul Metro files damages suit against disability rights group over subway protests”

<https://en.yna.co.kr/view/AEN20230110003100315> (최종방문일: 2023. 2. 13.).

²⁶ CCPR/C/GC/37, para 67.

²⁷ “장애인인권 옹호자들은 고용, 교육 및 사회복지에 대한 접근에서의 차별철폐를 주장하기 위한 표현 및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은 장애인인권의 존중 및 보호를 주장하는 시위 도중 종종 법 집행관에 의한 신체적 폭력과 막대한 벌금에 처해진다.”

A/HRC/25/55/Add.1, para. 99.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장과 논의 마쳤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경찰 진압을 공공연하게 선언했다.²⁸

23. 장애인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서도 재차 확인된다. 2023년 1월 2일, 서울교통공사는 "4호선 삼각지역 상선 당고개방면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타기 불법시위로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열차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서울, 경기, 인천 권역의 시민에게 '재난안전문자'로 발송하였다²⁹. 재난문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송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코로나19, 한파, 폭염, 태풍 등 자연재난 상황 등 인명이나 재산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송된다.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은 '불법'시위'로 규정하며 재난문자로 발송한 것은 발송 기본 원칙을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권리 집회에 대한 여론을 악화하는 기제가 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V. 요청

2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국은 장애인 단체는 물론 장애인 권리 옹호자, 인권 옹호자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다. 이미 장애인 인권옹호자들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과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 공무원들의 반인권적 탄압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25. 이에 우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특히 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대한민국의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주목하고, 집회의 자유와 장애인의 권리를 탄압하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보도자료나 서한을 신속하게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한다.
26. 또한 특별보고관이 대한민국에 공식 방문하여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을 만나 상황을 직접 조사하고 평가할 것을 요청한다.

²⁸ MBC, "오세훈 "전장연 시위 재개 용납 안해··경찰과 대응 논의 마쳐", 2022. 12. 26.,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9571_35673.html (최종방문일: 2023. 2. 13.).

²⁹ 경향신문, "전장연 시위 '재난문자'로 공지한 서울시...시민들 "문자 전송 기준 의문"", 2023. 1. 5., <https://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1051705011#c2b> (최종방문일: 2023. 2. 13.).

첨부. 2023.1.2.~3. 삼각지역 '지하철타기 행동' 관련 사진 및 영상

A. 활동가들에 비해 과도하게 투입된 경찰병력



2023년 1월 2일, 장애인 권리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삼각지역에 투입된 경찰들(출처: 뉴스시스(newsis))



2023년 1월 2일, 장애인 권리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삼각지역에 투입된 경찰들(출처: 뉴스앤조이)



지하철이 삼각지역에 도착했지만 경찰들이 장애인 활동가들의 탑승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

B.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한 부상, 휠체어 파손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휠체어에서 굴러 떨어진 활동가



경찰 진압 과정에서 파손된 전동휠체어



▲3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행동 해단식에 참여한 문경희 세종보람센터 소장. 문 소장은 시위 종료 이후 지하철에 탑승하려 했지만 경찰 통제에 막혀 열차에 오르지 못했다. ©프्रेस리안(한예섭)

집회 종료 후 지하철에 탑승하려다 경찰 통제에 막힌 활동가(출처: 프레스리안)

C. 장애인권 활동가들의 발언이 들리지 않게 경고방송으로 방해하는 서울교통공사/경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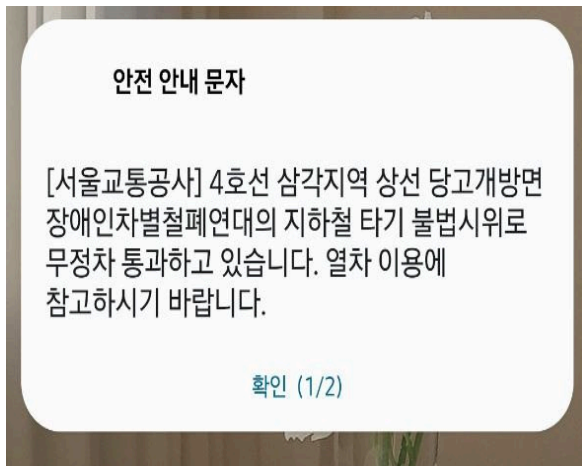


장애인권 활동가들의 발언이 들리지 않게 경고방송으로 방해하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장애인권 활동가들의 발언이 들리지 않게 확성기를 들이대며 방해하는 경찰(출처:연합뉴스)

D. 혐오를 조장하는 재난안전문자



2023년 1월 2일 서울교통공사가 발송한 재난안내문자

E. 영상

*영상 내에 폭력적인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6-bPeXPmx5uh7ZQycyZ1S6ePQBkqnisq/view?usp=share_link](https://drive.google.com/file/d/16-bPeXPmx5uh7ZQycyZ1S6ePQBkqnisq/view?usp=share_link)

[-https://drive.google.com/file/d/1bF0OA3AfNz8vUkHU_s_He7V2nPoLfYVHi/view?usp=share_link](https://drive.google.com/file/d/1bF0OA3AfNz8vUkHU_s_He7V2nPoLfYVHi/view?usp=share_link)